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2017.9.13.)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3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7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8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5
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7
10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26
1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29
1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3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8. 22.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6명)

(공동발의: 김향란, 강철우, 이흥희, 변상원, 박희순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8.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6.

2. 제정이유

-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4조)

라.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경제적 향상과 외식문화 활성화로 위생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 나. 관광산업이 외식산업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8. 22.

나.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5명)

(공동발의: 이홍희, 이성복, 표주숙, 박희순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8.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6.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적용범위, 절차,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마.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법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장애인도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라 생각되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개정이유

- 법률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불편·부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 근거 없이 의무 부과 내용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거: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군수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삭제함.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개정이유

- 거창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완화함(안 제2조)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상’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 법령에 맞게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제정이유

-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 나.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국·도비 보조금, 군·군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등
- 다. 기금의 계정별 용도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노인복지계정: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 자활계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사업 등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계정별 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이자율이 높은 예금의 관리 등

마.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14조)

○ 위원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나.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하여 그에 따른 제 규정을 명확히 제정함으로 복지기금관리의 효율성과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제정이유

-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아림 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운용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아림예술제, 아림예술제위원회
-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원: 국비·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등

- 용도: 아림예술제 행사, 아림예술제 진흥사업 등
- 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 해당연도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
- 바.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운영, 간사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 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구 제2조제2항, 제3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 나.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구 제9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제안이유

-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증액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변경 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말 조성액(a)	2017년도 기금조성 변경계획			2017년도말 변경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d)=(b)-c		
당초	55,632	15,287	3,000	12,287	67,919	
변경	55,632	17,287	5,000	12,287	67,919	
증감	-	2,000	2,000	-	-	

나.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천원)

구분	수입					지출				비고
	계	예치금 회수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	계	사무 관리비	기본 경비	예치금	
당초	70,919	55,632	12,210	3,000	77	70,919	3,000	-	67,919	
변경	72,919	55,632	12,210	5,000	77	72,919	5,000	-	67,919	
증감	2,000	-	-	2,000	-	2,000	2,000	-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 사업비가 당초 3,000천원이 내시되었으나 추가로 2,000천원이 더 내시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나. 기금의 자금운영계획 수입 및 지출 기본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며
- 다. 지출계획 기본원칙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요항목 지출계획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법령에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①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

1. 제안이유

- 시장 주차 수요대비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2. 추진경과

- 2017.1.19.: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신청(중소기업청)
- 2017.3.17: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선정

3.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거창시장 주차장 지내
- 사업기간: 2017.9. ~ 2018.6.

- 부지면적: 3,290m²(토지소유자: 거창군)
- 사업량: 3,750m²(3층 4단, 자주식 철골 주차장)
- 사업비: 2,930백만원(국비 1,758 군비 1,172)

4. 재산취득 내용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사업량				
신축	건물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대지	3,750m ² (주차면 190면)	2,930,000	2018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거창 군수

②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1. 제안이유

- 골프참여 인구의 대중화 및 국민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하여 조성 완료된 골프장 시설의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2. 추진경과

- 2008.12.2.: 골프장조성협약 체결(거창군 ⇔ 체육진흥공단)
- 2012.09. ~ 2016.06.: 골프장 조성공사(체육진흥공단)
- 2017.7.20.: 기부채납 승인 요청(체육진흥공단 ⇒ 거창군)

3. 기부채납 개요

- 기부자
 - 대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권한대행 김성호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거: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제5조(운영권보장 및 기부채납)

○ 기부재산가격(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고
총 액	19,943,363,854	
공 단	13,606,605,022	기부채납
거창군	6,337,058,832	진입도로 등

○ 기부채납 재산 현황

구 분	내 용
재산의 명칭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대 지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지 역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571,765.4m ² (172,958평)
기부채납재산	건축물 : 클럽하우스, 관리동, 경비실, 카트창고, 야외화장실, 라이트시설 골프코스 : 그린, 티, 페어웨이, 벙커, 러프, 연습그린

3] 균유임야 매각

1. 제안이유

-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균유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계장)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1980년대 후반 ~ : 양계업 시작.
- 2012.1.~4.: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및 최초 대부계약 체결.
- 2017.5.: 무허가 축사 양성화정책에 따라 임대 토지 불하 희망
- 2017.6.~7.: 산158번지에서 산158-1번지 분할 완료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

3.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158-1
- 면 적: 3,306m²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필지			992
매각	토지	북상면 갈계리 산158-1	임야	3,306	992

4.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어르신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함.
- 이에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자함.

2.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1개소 2필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재 산 의 표 시			소유자	비 고
위 치	지 목	면 적		
거창읍 김천리 237-16	잡종지	606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사유지	군유지 인접부지

3.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번지
- 사업기간: 2017.8. ~ 2018.3.
- 부지면적: 861m²(군소유: 530m², 개인소유: 331m²)
- 사 업 비: 1,191백만원(국·도비675, 군비516)

4. 재산취득 내용

(단위: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	신축

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

1. 제안이유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을 확충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치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2017.7.2.: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 수요조사(경남도→거창군)
- 2017.8.1.: 치매안심병동 수요조사보고(거창군→경남도)

3.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사업기간: 2017.9. ~ 2018.3.
- 규 모: 100병상 부지4,283m²(연면적2,568m²)

○ 사 업 비: 1,200백만원(국비960, 군비240)

○ 주요내용

- 2층 전체(50병상) 치매전문병실로 리모델링
- 4층 치매집중 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4. 재산취득 내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취득가액	비고
	소 재 지	장 소	면 적 등		
증축등	거창읍 운정3길180	2층(9실/50병상)	754.2	350,000	리모델링
		4층(증축/프로그램실)	198.0	600,000	증 축
		2층~4층	장비및프로그램	250,000	9종 등 구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현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준공 일자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부지면적	규 모			
대지	거창읍 운정3길180	4,283	-	'05.12.28.	515,244	거창군수
건물	거창읍 운정3길180	2,568	지하 1층 지상 4층	'05.12.28.	1,514,515	거창군수

3. 전문위원 검토요지

①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

가. 경제적 향상으로 차량이 사치성에서 생활필수품으로 됨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나. 오래된 전통시장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음

- 다. 이번 거창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은 다행이라 생각하나
- 라.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므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한 시장 주변이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을 저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 가.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국가 정책으로 국민의 골프참여 저변 확대와 고용창출과 더불어 소득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 나. 이권 기부채납은 거창군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호간 협약 체결한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제5 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기부 채납 후 권리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를 검토하여 거창군이 불리한 조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 균유임야 매각

- 가. 이권 토지는 무단 점유해 오다 변상금 납부 후 2012년부터 대부계약 체결을 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 나. 그리고 임대 토지 위에 불법 축사가 일부 건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면 축산농가는 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상황으로
- 다. 군으로서 이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고 보존성도 떨어진다고 검토되었으므로 축산농가의 민원해소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되어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④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 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그 수반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실제로 2020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명, 관리 비용은 1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가 있으면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 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치매 국가책임제가 우리 나라도 시행하게 되어 “한국형 치매관리 모형”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라.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가족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치매 가정에 있어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 마.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현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주변환경 여건에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

- 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그 수반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실제로 2020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명, 관리 비용은 1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가 있으면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 다. 치매가 심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소시켜야 하나 치매전문 요양병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에서 치매병동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 라. 거창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치매전문병실 확충과 치매집중 치료실 증축은 시대적 소명이며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제안이유

-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 문: 관광산업과 관광문화에 관한 회원 시군의 협력체제 구축 유지
- 나. 총 칙: 제1조~제4조
 - 1) 명 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 2) 목 적: 서부경남지역의 관광사업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등
 - 3) 사 업: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 설명회 개최 등

다. 회원 및 조직: 제5조~제10조

1) 회 원

가) 서부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1개 시군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1) 시: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

(2) 군: 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나) 공공기관 등

(1) 당연회원: 한국관광공사 경남권 관할지사장

(2) 추가할 수 있는 회원: 경남도청, 관광학계, 관광업계
대표 인사

2) 회 의

가) 구 분: 정기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정기총회는
1/4분기 정기회의)

나) 의 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3) 재 정

가) 수 입: 회원 시군별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나) 회 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운용기준 준용

다) 예산결산

(1) 예 산: 매년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같이 1/4분기
정기회의 의결

(2) 결 산: 다음 연도 1/4분기 정기회의 승인 의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이 규약안은 서부경남 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자치단체간 특성을 살린 관광벨트라인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공동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향후 이 규약의 목적되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챙겨나가야 한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요구이유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와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 나. 위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 다. 주요시설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242,184천원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시설과는 다른 특정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 나.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에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위·수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9. 6.

2. 요구이유

-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재 위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나. 시설현황
 - 위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 규모: 부지면적 4,283㎡(건축 연면적 2,568) 지하1층, 지상4층
 - 병상규모: 130병상
 - 세부시설현황
 - 지하1층: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지상1층: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임상병리실
 - 지상2, 3층: 간호사실, 입원병실
 - 지상4층: 식당
 -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 2,872개

다.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2007. 10. 23. ~ 2017. 10. 22.(10년간)
- 진료실적 현황(최근 5년간)

구분(년도)	합 계	외래환자	입원환자		비고
			전체입원환자수	거창군거주환자수	
계	10,298	9,169	1,129	962	
2012년	1,196	959	237	195	
2013년	2,417	2,179	238	206	
2014년	3,753	3,559	194	173	
2015년	2,094	1,877	217	189	
2016년	838	595	243	199	

- 인证的료기관 획득(2015년도)
 - 인증기간: 2015. 8. 9. ~ 2019. 8. 5.(4년간)
 - 평가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증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 간호인력 가산등급)
 -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1등급
 - 산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음

라. 재위탁 추진 상황

- 수탁기관(서경병원) 재수탁신청서 제출: 2017. 6. 14.
-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 2017. 6. 23.
- 재위탁 심의위원회개최: 2017. 7. 6.
 - ※ 심의위원: 7명(재 위탁 가결)

마. 향후 추진계획

- 재수탁기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2017. 10. 23. ~ 2022. 10. 22.

- 위탁내용
 - 치매환자의 진료 및 입원 관리
 - 거창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위·수탁 운영계약서 공증 및 계약체결: 2017. 9월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나. 사전 행정절차인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거창군립노인요양 병원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2017. 7. 6 개최 원안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 되었음
- 다. 상위 법령 및 조례,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은 문제점이 없으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노력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